

1. 개정이유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 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가합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6항)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확인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1. ~ 9.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내지 않을”을 “면제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면제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6항,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⑤ (생략)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험실시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제21조(응시수수료)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 ----- ----- -----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신 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

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

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응

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

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